

1. 금융투자소득 및 과세표준의 계산 4단계

- 금융투자소득은 상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, 아래의 3단계에 따라 금융투자소득(0보다 작을 경우 금융투자결손금)을 계산하게 됩니다.

<1단계>	금융투자소득의 그룹별 분류 및 그룹 내 합산
<2단계>	금융투자소득의 그룹 간 합산
<3단계>	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의 공제
<4단계>	기본공제금액 차감 및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

<1단계> 금융투자소득의 그룹별 분류 및 그룹 내 합산

가. 기본공제 그룹별 분류 및 손익합산

- 금융투자소득은 아래와 같이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일 그룹 내 발생한 이익과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[소법 §87의18, 소령 §150의9①]

구분	내용
1그룹 (5,000만원 기본공제 대상)	①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 (KOSPI 등 주식시장에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)
	② K-OTC 중소기업/중견기업 주식의 K-OTC 양도소득*
	③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 (국내 주식형 ETF 포함)
	④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
2그룹 (250만원 기본공제 대상)	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(예 :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, 해외주식 양도 등)

* K-OTC BB 대상종목은 2그룹 : K-OTC 등록 및 지정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임[K-OTC BB 운영시행세칙 제3조]

사례1)

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1,000만원 발생하고
K-OTC에서 거래한 비상장주식에서 손실이 500만원 발생한 경우
1그룹의 금융투자소득은 1,000만 - 500만 =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.

사례2)

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1,000만원 발생하고
파생결합증권에서 손실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
1그룹에서는 1,0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이 계산되고
2그룹에서는 금융투자손실이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.

<2단계> 금융투자소득의 그룹 간 합산

- 그룹별로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룹 간 소득금액 합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그러나 한 그룹의 금융투자소득은 0보다 큰 반면 다른 그룹의 금융투자소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룹 간 소득을 합산한 다음 이월결손금 및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.

(단위 : 만원)

구분	금융투자소득금액 (그룹 내 통산)		금융투자소득금액 (그룹 간 통산)	
	1그룹	2그룹	1그룹	2그룹
	Case 1	5,000	2,000	5,000
Case 2	5,000	△2,000	3,000	-
Case 3	△2,000	2,000	-	-
Case 4	△2,000	△2,000	△2,000	△2,000

<3단계>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의 공제 (2025년 발생 이월결손금부터 가능)

공제내용	2025년 중에 “금융투자 결손금”이 발생한 경우, 해당 결손금은 그 다음 해로 이월되어 (“금융투자 이월결손금”) 2026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공제기간	5년
공제순서	① 1그룹 (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)에서 우선 공제 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
공제방법	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차례로 차감하되, 1그룹과 2그룹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한 경우 <u>1그룹 소득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.</u> [소령 §150의5①] 한편, 1그룹과 2그룹에서 모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.

- 위 <2단계>에서 제시한 Case별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면,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 잔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
- 아래의 Case 3, 4과 같이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, 이를 이월하여 이후 5년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 [소득세법 제87조의4 제2항]

(단위 : 만원)

구분	금융투자소득금액 (그룹 간 통산)		이월 결손금	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융투자소득금액		차기이월 결손금 잔액
	1그룹	2그룹		1그룹	2그룹	
Case 1	5,000	2,000	△2,000	3,000	2,000	
Case 2	3,000	-	△2,000	1,000	-	
Case 3	-	-	△2,000	-	-	△2,000
Case 4	△2,000	△2,000	△2,000	△2,000	△2,000	△6,000

<4단계> 기본공제금액 차감 및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

-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1그룹에 대해서는 5,000만원을 한도로, 2그룹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한도로 하는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.

[소법 §87의4② 및 소령 §150의9①]

(단위 : 만원)

구분	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융투자소득금액		기본공제금액 차감 후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(1그룹은 5,000만원까지, 2그룹은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)
	1그룹	2그룹	
Case 1	3,000	2,000	$(3,000 - 3,000) + (2,000 - 250) = 1,750$
Case 2	1,000	-	$(1,000 - 1,000) = 0$
Case 3	-	-	-
Case 4	△2,000	△2,000	-

- 결손금 및 기본공제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차감 순서	① 그 연도에 같은 그룹(1그룹, 2그룹) 내에서 타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결손금 차감
	② 그 연도에 다른 그룹에서 발생한 결손금 차감
	③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차감
	④ 기본공제 차감

<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 후 과세 현황 >

2024년 이전 (금융투자소득 도입 전)

투자 대상	주식				펀드		채권	파생결합증권				파생상품	
	해외 주식	비상장	상장 (대주주)	상장 (소액)	투자 신탁	투자 회사		ELW	ELS/DLS	ETN	ELB/DLB	주가 지수형	기타
양도	양도소득		비과세	배당 소득	양도 소득	비과세	양도 소득	비과세	배당 소득*	비과세	양도 소득	비과세	
환매	-		배당 소득	-	-	배당 소득	양도 소득	비과세					
분배등	배당 소득		배당 소득	이자 소득	-	배당 소득	양도 소득	비과세					
거래세	-	0.35%	0.2%, 0.18%						-				
기본 공제	250만원		-		250만원				-		250만원	-	
손익 통산	손익통산		불가능		손익 통산				불가능		손익 통산	-	
세율	양도소득세 22%/27.5%		배당소득세 (채권은 이자소득만 과세) 15.4%~49.5%								양도 소득세 11%	-	
손실 이월	불가능												

* 국내주식형 ETN 거래소 매도 시 비과세

2025년 이후 (금융투자소득 도입 이후)

투자 대상	주식				펀드		채권	파생결합증권				파생상품	
	해외 주식	비상장	상장 (대주주)	상장 (소액)	투자 신탁	투자 회사		ELW	ELS/DLS	ETN	ELB/DLB	주가 지수형	기타
양도	금융투자소득				금융투자소득		금융 투자 소득	금융투자소득				금융투자소득	
환매	-						금융 투자 소득	금융투자소득					
분배등	배당 소득				배당 소득		이자 소득	-	금융투자소득	이자 소득			
거래세	-	0.35%	0.15%						-				
기본 공제	연간 250만원		연간 5,000만원 (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포함)						연간 250만원 (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이외의 기타 펀드)				
손익 통산	전체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 (이자, 배당은 손익통산 불가)												
세율	금융투자소득세 22% / 27.5% (과세표준 3억 초과)												
손실 이월	5년 간 손실 이월 허용												